

최초 제정일	2025-01-02
최신 개정일	2025-01-02
문서 관리자	지속경영팀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선언문

하림은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문화를 선도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서, 협력사와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거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발전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하림은 원부자재 조달, 사료·부화·사육, 도계·가공, 포장, 물류,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주요 가치사슬 전반에서 인권,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공정거래, 제품안전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림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UN 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및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 국제 책임경영 기준의 취지와 주요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공급망 관리와 구매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림은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운영하고, 핵심 협력사 및 고위험 협력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실사를 실시하여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예방 및 완화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교육, 컨설팅 및 개선 지원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ESG 역량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하림은 공급망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책임과 영향력 수준에 따라 적절한 예방·시정·구제 조치를 취하거나 이에 협력하겠습니다.

하림은 협력사 근로자, 사육농가, 지역사회,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공급망 관련 우려사항을 안전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및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신고자·피해자·조사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복금지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하림은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가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최고경영진의 책임 아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현황과 주요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하림 대표이사 정 호 석



전 문

주식회사 하림(이하 “회사”)은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회사의 자체 사업장뿐 아니라 원부자재 공급사, 사육농가, 외주가공업체, 물류업체, 용역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의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회사는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단순한 법규준수 또는 회사의 재무·평판 위험 관점에 한정하지 않고, 협력사 근로자, 사육농가, 지역사회, 고객, 소비자, 환경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식별하고 관리한다.

회사는 본 정책을 통해 협력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인권·노동·안전보건·환경·윤리·정보보호·제품책임 및 공급망 회복력과 관련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강화하고, 실사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제1장 총칙

1. 목적

본 정책은 회사의 공급망 및 사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지속가능성 위험과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해소·구제하기 위한 기본원칙, 관리체계 및 공급망 실사의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준거 기준

(1) 회사는 다음의 국제 기준 및 국내외 관련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① 세계인권선언
- ②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 ③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OECD 기업책임경영 실사 가이드
- ④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및 국제노동기준
- ⑤ UN 글로벌컴팩트 10대 원칙
- ⑥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
- ⑦ GRI Standards 및 K-ESG 가이드라인
- ⑧ 공정거래, 하도급, 상생협력, 노동, 산업안전보건, 환경, 식품안전,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국내외 법령
- ⑨ 하림 윤리헌장, 윤리강령, 협력사 ESG 행동규범 및 기타 관련 내부규정

(2) 회사는 국제 책임경영 기준의 취지와 주요 원칙을 참고하여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3) 현지 법령과 국제 기준이 상충하거나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적용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및 환경 보호 수준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적용범위

- (1) 본 정책은 회사의 구매, 계약, 생산, 사육, 품질, 물류, 영업, 안전보건, 환경, 정보보호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공급망 관리 대상은 회사와 일정 기간 지속이 예상되는 유의미한 직·간접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사육농가, 외주가공업체, 물류업체, 유통업체, 용역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를 포함한다.
- (3)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협력사 근로자, 사육농가, 고객, 소비자,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인권·환경·안전 및 권익을 고려한다.
- (4) 회사는 모든 1차 협력사를 기본 관리대상으로 하되, 영향의 심각성, 발생가능성, 거래 중요성, 회사의 영향력, 업종·지역 특성 및 정보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 협력사와 고위험 협력사를 우선 관리한다.

4. 용어의 정의

- (1) “공급망”이란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유통업체 등 회사와 일정 기간 지속이 예상되는 유의미한 직·간접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와,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고객,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가치사슬 전반을 말한다.
- (2) “협력사”란 회사에 제품, 원부자재, 용역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1 차 협력사 및 그 하도급 협력사를 말한다.
- (3)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예방·완화·개선조치를 수립·이행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지속적인 관리과정을 말한다.
- (4) “부정적 영향”이란 회사 또는 협력사의 경영활동, 제품, 서비스 및 사업관계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공정거래, 제품안전, 정보보호 및 지역사회 관련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제 2 장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기본원칙

5. 책임 있는 조달 및 공정한 거래

- (1) 회사는 가격, 품질, 납기 및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법규준수 및 지속가능성 수준을 고려하여 협력사를 선정·평가·관리한다.
- (2)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며, 불합리한 납기, 예측하기 어려운 발주 변경,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 (3) 회사는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경영을 저해할 수 있는 구매관행을 점검하고, 계약조건·납기·품질기준·발주계획 등이 협력사의 인권,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
- (4) 회사는 지속가능성 기준의 이행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협력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으며, 중소 협력사의 인력·예산·전문성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선과 적절한 지원을 추진한다.

6. 협력사 ESG 행동규범

- (1) 회사는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환경, 안전보건, 인권, 노동, 윤리, 공정거래, 정보보호 및 지역사회 관련 기본원칙을 협력사 ESG 행동규범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 (2) 회사는 신규 계약 체결 및 계약 갱신 시 협력사에게 행동규범을 안내하고, 원칙적으로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 (3) 회사는 협력사가 자신의 하도급 협력사 및 주요 사업관계자에게도 본 정책의 취지와 행동규범의 주요 원칙을 전파하도록 권고한다.

7. 인권·노동 및 안전보건 보호

- (1) 회사는 공급망에서 차별,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임금체불, 과도한 근로시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및 기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2) 회사는 협력사 근로자, 일용직·기간제·파견·도급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및 기타 취약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예방활동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3) 생명·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안전보건 위반,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및 중대한 인권침해는 최우선 관리대상으로 본다.

8. 환경·기후 및 자원순환 관리

- (1) 회사는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및 용수 사용, 폐기물 발생, 대기·수질오염, 유해화학물질 관리, 자원고갈, 생물다양성 훼손 및 기타 환경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한다.
- (2) 회사는 협력사가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수자원 보호, 폐기물 감량·재활용 및 오염물질 저감을 추진하도록 권고한다.
- (3) 회사는 식품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육·가공·포장·물류 등 주요 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친환경 기술 및 설비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

9. 윤리·제품책임 및 정보보호

- (1) 회사는 공급망 내 뇌물, 부패, 부정청탁, 담합, 불공정 경쟁, 이해상충, 허위정보 제공 및 기타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 (2)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품질 및 추적가능성을 관리하고, 소비자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 (3) 회사는 공급망에서 취득한 협력사, 근로자,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와 영업상 정보를 관련 법령 및 내부기준에 따라 보호한다.

10. 공급망 추적가능성 및 회복력

- (1) 회사는 원부자재, 제품 및 서비스의 출처, 원산지, 생산·가공·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급망 추적가능성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2) 회사는 특정 국가·지역·협력사 또는 물류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 자연재해, 감염병,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및 기타 공급 차질 요인을 식별하고 관리한다.
- (3) 회사는 공급선과 물류망 다변화, 대체 공급사 발굴, 적정 재고 확보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원부자재 수급 안정성과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3 장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체계 및 실사

11. 거버넌스 및 실행조직

- (1) 대표이사는 본 정책을 승인하고,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및 권한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2) ESG 위원회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의 주요 방향, 연간 실사계획, 고위험 이슈 및 개선과제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3) 지속경영팀은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전담부서로서 다음 업무를 총괄한다.
 - ①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 및 실사 운영기준 관리
 - ② 연간 공급망 실사계획 수립 및 실사 운영 총괄
 - ③ 핵심 협력사 및 고위험 협력사 관리
 - ④ 개선과제 및 시정조치 이행현황 점검
 - ⑤ 협력사 ESG 교육·컨설팅 및 지원
 - ⑥ 공급망 관련 고충처리, 성과 공시 및 이해관계자 소통
- (4) 구매·전략구매, 생산, 사육, 품질, 안전보건, 환경, 물류, 인사·노무, 정보보호, 윤리경영 및 기타 유관부서는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험 식별, 실사, 개선조치 및 모니터링에 참여한다.
- (5) 협력사는 관련 법령과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공급망 실사 및 개선활동에 성실히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12. 실사 범위 및 주기

- (1) 회사는 모든 1 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핵심 협력사 및 고위험 협력사를 중심으로 우선 실사를 실시한다.
- (2) 실사 범위는 협력사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활동과 관리체계를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 인권·노동, 산업안전보건, 환경·기후, 윤리·공정거래, 제품안전·품질, 정보보호, 공급망 추적가능성 및 수급 안정성 관련 위험을 포함한다.
- (3) 회사는 신규 핵심 협력사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 공급망 지속가능성 위험을 확인한다.
- (4) 회사는 기존 핵심 협력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연 1 회 이상 정기 실사를 실시한다.
- (5) 회사는 다음의 경우 수시 실사 또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중대한 산업재해, 환경사고, 인권침해, 부패행위, 제품안전 문제 또는 법규위반이 발생한 경우
 - ② 고충·제보, 민원, 행정처분, 언론보도 또는 기타 중대한 외부 이슈가 확인된 경우
 - ③ 원부자재 조달구조, 사업장, 생산방식, 원산지 또는 물류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④ 고위험 협력사 또는 개선조치 이행이 필요한 협력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경우
 - ⑤ ESG 위원회, 대표이사 또는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3. 실사 프로세스 및 방법

(1) 회사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 ① 실사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 ② 공급망 위험과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 ③ 위험의 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
- ④ 예방·완화·개선조치 수립 및 이행
- ⑤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재평가
- ⑥ 주요 결과의 내부 보고 및 이해관계자 소통

- (2) 회사는 협력사 자가진단, 서면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관련 문서 검토, 공개정보 및 외부 이슈 분석, 고충·제보 확인, 현장점검, 근로자 또는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필요 시 외부전문가 검토 등 적절한 방법을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 (3) 회사는 고위험 협력사 또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거나 확인될 우려가 높은 경우 현장실사, 추가자료 검토, 근로자 인터뷰 또는 외부전문가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4) 회사는 위험을 평가할 때 영향의 규모, 범위, 회복곤란성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며, 생명·안전에 대한 즉각적 위험,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중대한 환경오염, 중대한 부패 및 자료 허위제출 등은 최우선 관리대상으로 본다.
- (5) 공급망 실사의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현장실사 절차, 시정조치계획, 재평가 주기 및 기록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은 「공급망 관리 규정」 및 「공급망(협력사) 실사 지침」에 따른다.

14. 예방·개선 및 모니터링

- (1) 회사는 공급망에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협력사와 협의하여 예방·완화 및 개선조치를 추진한다.
- (2) 회사는 개선이 필요한 협력사에 대해 시정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공동개선과제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3) 지속경영팀과 유관부서는 시정조치계획의 이행현황, 고충·제보, 산업재해·환경사고, 법규위반, 외부 이슈 및 재평가 결과 등을 통해 주요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4) 회사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합리적인 개선지원 및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사안의 심각성 및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조건 조정, 거래물량 축소, 거래 일시 중단 또는 거래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
- (5)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검토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조치가 협력사 근로자,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고려한다. 다만 생명·안전에 대한 긴급한 위험, 강제노동, 아동노동, 중대한 환경오염 또는 중대한 부패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 협력사 ESG 역량 강화

- (1) 회사는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높이고 공급망 전반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사 ESG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 (2) 회사는 협력사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하여 ESG, 환경, 안전보건, 품질, 인권·노동 및 윤리 관련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기술협력 및 공동개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3) 회사는 중소 협력사가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기회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6. 이해관계자 참여 및 고충처리

- (1) 회사는 공급망 실사, 개선과제 수립 및 정책 검토 과정에서 협력사, 사육농가, 협력사 근로자, 지역사회,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회사는 공급망 관련 인권,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공정거래, 제품안전 및 정보보호 관련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및 신고채널을 운영한다.
- (3) 회사는 신고자, 피해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보호하며, 신고·상담·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차별, 불이익 또는 보복을 금지한다.
- (4) 실제적 부정적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안의 성격과 회사의 책임·영향력 수준에 따라 적절한 피해 회복 또는 구제에 협력한다.

제 5 장 공시 및 정책 관리

17. 공시 및 이해관계자 소통

- (1) 회사는 본 정책, 협력사 ESG 행동규범, 공급망 관리체계 및 주요 추진성과를 회사의 공식 채널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2) 회사는 핵심 협력사 관리 현황, 공급망 실사 실시 현황, 주요 개선활동, 협력사 ESG 지원, 공급망 관련 고충처리 및 주요 성과를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자에게 소통한다.
- (3) 회사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계약상 기밀정보 및 조사 중인 사건의 민감정보를 관련 법령 및 내부기준에 따라 보호한다.

18. 교육, 검토 및 세부 운영

- (1)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본 정책 및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안내를 제공한다.

- (2) 회사는 공급망 관련 법령, 국제기준, 사업환경, 실사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하여 본 정책의 적정성과 이행현황을 연 1 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 (3)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의 세부 운영기준은 「공급망 관리 규정」 및 「공급망(협력사) 실사 지침」에 따른다.

부 칙

1. 본 정책은 대표이사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책과 관련 내부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인권·환경·안전 및 지속가능성 보호 수준이 더 높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